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2018. 1

백영화 · 박정희

머 리 말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공하는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수리, 교환, 품질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보증 연장 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단순한 서비스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보험업법이나 관련 판례에서는 보험에 대하여 완전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보다는 보험의 주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러한 주요 요소들도 비교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보험과 단순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에도 보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하여 이를 보험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보험과 경계가 모호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보험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로서 허용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규율할 것인지,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법규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한다면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측면에서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보험과 보증연장 서비스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8년 1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0

1. 연구배경 / 10

2. 연구방법 / 12

II. 국내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 13

1.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 / 13

2.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 21

III. 해외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 25

1. 영국 / 25

2. 일본 / 30

3. 미국 / 40

IV.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52

1.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 / 52

2. 주요 쟁점 / 55

3. 맺음말 / 67

| 참고문헌 | / 69

| 부록 | / 70

부록 I. 영국 PERG 6: Guidance on the Identification of
Contracts of Insurance / 70

부록 II. 미국 NAIC의 서비스계약 모델법 / 74

■ 표 차례

- 〈표 Ⅱ-1〉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의미 및 범위 / 14
- 〈표 Ⅱ-2〉 보험업법 규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던 상품 / 22
- 〈표 Ⅲ-1〉 영국의 보험 중목 / 26
- 〈표 Ⅲ-2〉 일본 금융청의 회신 사례 / 33
- 〈표 Ⅲ-3〉 NAIC 서비스계약 모델법의 구성 / 43
- 〈표 Ⅲ-4〉 서비스계약에 관한 미국 각주별 입법례 유형 / 46
- 〈표 Ⅳ-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비교 / 55
- 〈표 Ⅳ-2〉 서비스계약 모델법상 제조사에 대한 규제 / 57
- 〈표 Ⅳ-3〉 휴대폰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 61
- 〈표 Ⅳ-4〉 설립연도별 상조서비스업체 및 회원 수 증가 추이 / 65
- 〈표 Ⅳ-5〉 연도별 상조서비스 피해유형 / 66

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Extended Warranties

Extended warranties generally promise, for a separate or additional consideration and for a specific duration, to perform the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of property due to defects in materials or workmanship or wear and tear, etc.

There has been controversy as to whether extended warranties fall under the scope of insurance or not. The distinction between extended warranties and insurance contracts could be difficult to identify, since the relevant laws or court precedents simply present the key elements of insurance contracts, instead of providing specific and clear criteria on the distinction of service contracts and insurance contracts.

In order to remove or mitigate the legal uncertainties, it would be appropriate that the regulatory authorities fix their position as to what extent extended warranties could be provided as service contracts and where extended warranties should be regulated as insurance contracts, and further, explicitly reflect such position in the relevant laws or regula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insurance regulatory regime on extended warranties in the U.K., Japan, and the U.S. and tried to discuss on the possible options to regulate extended warranties in Korea. We hope this study serves as a forum for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legal standards for distinction of extended warranties and insurance contracts.

요 약

I. 서론

- 보증연장 서비스는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상으로 제품에 대한 수리, 교환 등을 해주는 서비스임
 - 일반적으로는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무상보증기간 종료 후에 유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품의 하자,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경우를 의미함
 - 그 외에 서비스 제공자가 확대되거나(제조사·판매사 외의 제3자), 담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파손 등을 담보)도 있을 수 있음
- 보증연장 서비스를 단순한 서비스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의 구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단순 서비스계약으로 허용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취급하여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법규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본 연구는 해외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측면에서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II. 국내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 현재 관련 법규나 판례상으로는 개별 사안에서 서비스계약과 보험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 상법, 보험업법 및 판례에서는 보험의 의미에 대해 완전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가보다는 보험의 주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임
 - 관련 법규 및 판례상 보험의 주요 요소는 ‘위험보장 목적’, ‘우연한 사고’, ‘보험료의 수수를 통한 공동 재산의 구축’, ‘보험금부의 지급’, ‘확률계산방법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균형 유지’ 등임
 - 위 요소들도 비교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보험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서비스계약인지 구분이 쉽지 않음

- 보증연장 서비스도 보험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해당함
 - 보증연장 서비스도 관련 법규 및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보험의 주요 요소들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제품의 고장 등과 같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이라는 요소가 있음
 -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것임
 - 해당 금액은 어떠한 식으로든 확률적·통계적 계산을 통해 급부와 반대급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산정됨
 - 서비스 제공자는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재원으로 하여 수리, 교환, 품질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그러나 보증연장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음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품질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지 새로운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님
 - 제품의 하자, 통상적 소모 및 마모는 제품에 내재된 위험으로 볼 수 있고 우연성이 약함

- 감독당국 실무상으로도 제조사·판매사가 통상적 소모 및 마모, 제품의 하자를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아닌 단순한 부가서비스로 인정한 사례가 있음
 - 이와 달리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

- 한편 현재 보험업법상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다루고 있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음
 - 과거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 법령 개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음
 - 이에 현재는 법적 근거 규정 없이 감독당국 실무상으로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만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임

Ⅲ. 해외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1. 영국

- 영국에서는 FCA 지침을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음
 - FCA는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The Perimeter Guidance manual, Chapter 6, 「Guidance on the Identification of Contracts of Insurance」)을 두고 있음
- FCA 지침에서는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단순 보증 서비스와,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 및 확대된 보증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부담하는 단순 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그러나 제조사·판매사의 단순 보증 서비스보다 그 내용, 범위 또는 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
 - 다만 어떠한 경우가 그 내용, 범위, 또는 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
 - 이와 관련하여 FCA는 계열회사의 경우에도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

2. 일본

■ 일본에서도 금융청(金融庁)의 감독지침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소액단기보험업자에 대한 감독지침」(少額短期保険業者向けの監督指針)에서, 미리 사고 발생에 관계없이 금전을 징수하고 사고 발생 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서비스 제공 약정의 내용, 해당 서비스의 제공 주체·방법, 기존에 해당 서비스가 보험거래와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 보험업법의 규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라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물건의 제조·판매에 부수하여 그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고장 시 수리 등을 하는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일본 금융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수리·교환 서비스 사업의 보험업 해당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판단하였음

- 해당 수리·교환 서비스가 해당 물건의 제공에 밀접히 관련된 부수적인 거래인지, 해당 서비스가 메이커 보증의 연장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해당 서비스가

금전적인 손실 보전을 약속하기보다는 용역의 제공·대체품 제공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재무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유권해석 사례에 의하면,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직접 수리·교환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가 된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
- 수리·교환 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파손에 대하여 수리·교환을 해주는 경우에도 보험업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음

3. 미국

■ 미국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하여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가 서비스계약 모델법을 마련하였음

- 서비스계약 모델법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은 아닌 것으로 취급하여 보험법규의 적용은 배제하는 것으로 정함
- 다만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일정 정도 주 보험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주 보험감독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서비스계약에 따른 충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 영업행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금지 행위 등에 대해 규제함
 - 주 보험감독당국은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서비스계약 모델법에 의하면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서비스계약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담보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로 인한 경우를 담보하는 것으로 함

- 그러나 주별 입법례에 따라 해당 제품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도 서비스계약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관련 법규에서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 미국의 다수 주에서는 휴대용 전자제품을 담보하는 보험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는 법규를 두고 있음
 -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 등을 담보하는 서비스계약을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의 범위에서 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많음

IV.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법규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보험상품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 상품으로 허용을 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상품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법규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도 감독당국의 지침 또는 법규를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과의 구분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해 놓음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1.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

-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실무에서 보험이 아닌 것으

로 인정되고 있는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음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규 등에 명시하는 것임
- 현재 시장에서의 실무를 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법에 규정된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외의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좀 더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 상품으로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인정해주고 이를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 제3자의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을 인정하거나, 담보 범위에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있겠음
-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개발·판매에 따른 소비자 편익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보험상품으로서의 성격이 증대되는 경우이므로, 보증연장 서비스의 운영 또는 그 제공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할 것임

2. 보증연장 서비스 확대 인정 시 주요 쟁점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이 아닌 것으로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제3자가 독립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한 담보의 연장선상이나 부가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위

험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함

- 제품의 질이나 기능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품 구매자들로부터 고장 등의 위험을 인수하고 이를 집적, 관리한다는 것은 보험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해줄 유인은 크지 않아 보임

- 물론,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 경쟁촉진 필요성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제3자의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 허용에 대해 재검토해볼 수 있겠음

- 한편 실제 수리·교환은 제품의 제조사·판매사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수행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서비스 제공 및 책임의 주체가 제조사·판매사인 경우에는 제조사·판매사의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이 아닌 것으로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의 경우보다는 우연성·외래성이 높은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의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에 있어 그 발생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오직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도난이나 분실보다는 우연성·외래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음
- 미국, 일본에서도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보증연장 서비스로 담보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보증연장 서비스로 담보하는 것이 소비자 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음
 - 제품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와 파손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험으로의 담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임

- 그렇다면 정책적 결정에 따라, 보증연장 서비스로 담보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일 것임
- 보증연장 서비스를 확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제보자 측면에서건, 담보 범위 측면에서건, 보증연장 서비스를 확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좀 더 강해지는 것이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측면에서의 규제가 필요할 것임
 - 특히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 규제(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화)가 필요할 것이며, 그 밖에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규제 수준 및 내용은 해당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내용과 거래 구조, 서비스 가액 및 시장 규모,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재무건전성 규제 필요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I. 서론

1. 연구배경

어떠한 제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사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 수리, 교환, 품질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해당 제품에 대한 수리, 교환, 품질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한다는 개념에서, 이를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 “EW”) 서비스라고 한다.

이러한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 단순한 서비스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만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상품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보험회사가 아닌 자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보험업법에 위반되는 결과가 된다.¹⁾

실제로 자동차업계에서 제공되는 보증연장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적이 있었다. 자동차 제조사의 무상 보증수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상으로 보증수리 기간을 연장하는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이러한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다.²⁾

1) 현행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2018. 5. 1.부터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함(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

2) 강기정 의원실 보도자료(2015. 9. 14), “금융위, 자동차업계 보증연장 서비스 판매 제동,

이에 대해 당시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사가 직접 판매하는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은 제외하고,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³⁾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사가 아니면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업체가 실제로 보험업법 위반(무허가 보험업 영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이 과연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것인지,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제품의 제조사·판매사인지는 아니면 제3자인지에 따라 보험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아울러,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도,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은 어느 경우에도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이 담보하는 범위와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현재는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상품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보험상품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 상품으로서 허용을 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상품으로 취급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고, 나아가 이를 법규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경감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해외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3자 판매방식·보험업법 위반소지 있다”. 당시 강기정 의원은 “차제에 금융위가 유사한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마련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3) 위 강기정 의원실 보도자료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법규 및 판례상 보험상품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당 기준에 따라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를 분석해본다. 아울러 국내 시장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영국,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현황과 제도를 조사한다. 여기서는 보험업 규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즉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으로서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및 해외 현황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 측면에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가능한 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국내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우선 국내 관련 법규 및 판례상 보험의 정의 및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이를 토대로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국내에서의 그 동안의 입법 시도와 시장 및 규제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

가. 보험상품 및 보험업의 정의

1) 관련 법규상 보험상품 및 보험업의 정의

상법은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8조).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이 보험업에 해당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보험상품”의 의미에 대해 보험업법은 ① 일반적 정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② 명시적 포함 및 ③ 명시적 제외를 통해 구체성을 확보하는 3단계 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⁴⁾

〈표 II-1〉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의미 및 범위

일반적 정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명시적 포함	•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① 생명보험계약 및 ②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포함) •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① 화재보험계약, ②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 포함), ③ 자동차보험계약, ④ 보증보험계약, ⑤ 재보험계약, ⑥ 책임보험계약, ⑦ 기술보험계약, ⑧ 권리보험계약, ⑨ 도난보험계약, ⑩ 유리보험계약, ⑪ 동물보험계약, ⑫ 원자력보험계약, ⑬ 비용보험계약, ⑭ 날씨보험계약 •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① 상해보험계약, ② 질병보험계약, ③ 간병보험계약
명시적 제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주: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즉,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보험상품에 대해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동호 가목 내지 다목으로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세부 정의하면서 각각의 구체적 상품 유형은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4) (구)재정경제부(2007. 12)

정하도록 위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보험상품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유형에 대해서도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대법원 판례상 보험상품 및 보험업의 정의

대법원 판례는 보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보험의 개념에 대하여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일정량의 금액 즉 보험료를 출연하여 공동준비 재산을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즉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보험의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①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일 것, ②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비축금을 마련하는 제도일 것, ③ 그 방법으로서 이른바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2172 판결 등).

이러한 기준하에서 보험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만 55세 이상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상조회를 조직하여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입회비와 상조비를 납부받고 상조회원이 사망한 경우 일정액의 상조부의금을 지급하는 상조사업을 운영한 사안에서, 해당 상조사업이 보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해당 상조사업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사업명칭이나 출연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2172 판결).

또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조합원들의 개인택시사업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손실을 공동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조합원 전원을 회원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분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공동준비재산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상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자기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차·자손 상호회사업업을 운영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상호회사업에 대하여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조합원들에게 생긴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비축한 자금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방법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고, 해당 상호회사업이 비영리적이라거나 구성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540 판결).

나)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혼 및 장의행사와 같은 역무를 제공하는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회사와 가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씩 일정기간 회비를 적립하면 결혼 및 장의행사 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회사는 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결혼 또는 장의행사와 같은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보험업법 소정의 보험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565 판결).

또한 일정한 비용을 미리 지급받은 대가로 긴급의료지원서비스(의료상담과 의료기관 알선 서비스, 심각한 의료 상태에 있는 회원의 이송 및 본국 송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의 ‘위험보장의 목적’은 단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급부의 제공으로 손해가 보전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경제적 위험보장의 목적이 보험업 영위가 문제되는 대상영업의 주된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해당 사안에서 문제된 긴급의료지원서비스의 경우, 심각한 의료상태라는 우연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 있는 급부인 이송·송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연성 및 경제적 보상의 요소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가입자가 결과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게 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비용보상 효과만으로 당연히 해당 서비스가 경제적 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해당 서비스는 단순히 이송·송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을 포함하는 종합적·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용역을 포함하는 것은 보험사업자가 다양한 보험수요에 맞추어 보험급부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미이지, 계약 당시 용역제공 여부가 미리 정하여지지 아니한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모두 보험상품으로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은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 즉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급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험사 내지는 고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금전에 대한 대체적 의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소결

앞서 살펴본 상법, 보험업법 조항 및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보험의 개념은, ‘위험보장 목적’, ‘우연한 사고’, ‘보험료의 수수를 통한 공동 재산의 구축’, ‘보험급부의 지급’, ‘확률계산방법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균형 유지’ 등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의 의미에 대하여 완전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기보다는 보험의 주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도 비교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

1) 보험상품과 단순 서비스 상품의 구분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계약이 있고, 이러한 계약들 중에는 서비스 대금을 미리 지급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에는 서비스 제공 여부나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우연한 사건이 발생해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⁵⁾

이러한 서비스계약들의 경우,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고, 우연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자는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재원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급부와 반대급부는 확률적 계산을 통해 그 금액을 산정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보험의 개념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의 개념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계약들을 모두 보험상품으로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사고 발생에 대한 급부로서 ‘금전’이 아닌 ‘용역’이 제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들이 있다. 즉, 사망이라는 사고 발생 시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⁶⁾ 장의행사

5) 예를 들어, 일정한 비용을 먼저 지급받은 다음 일정 기간 동안 보안전문회사가 제공하는 방범서비스의 경우 도난 등의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야 출동서비스 등이 이루어지는 것임

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조부의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조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위 대법원 87도2172 판결)

와 같은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위 대법원 87도565 판결). 또한 긴급의료지원서비스 사안에서는 단지 경제적 가치 있는 급부의 제공으로 손해가 보전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보장의 목적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경제적 위험보장의 목적이 해당 영업의 주된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급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험회사 내지는 고객의 편의상 금전에 대한 대체적 의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만 보험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위 대법원 2013도10457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금전’이 아닌 ‘용역’의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고 발생에 대한 급부로서 ‘금전’이 아닌 ‘용역’이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보험상품이 아닌 단순 서비스 상품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비용이 보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와 금전이 제공되는 경우를 특별히 달리 취급해야 할 근거는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즉 경제적 위험보장의 목적이 해당 영업의 주된 목적인지 아닌지, 비용 보상이 목적인지 용역 제공 자체가 목적인지, 금전의 대체적 의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결국, 현행 법규 및 판례상 기준으로는 개별 사안에서 보험상품과 단순 서비스 상품을 명확히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다.

2)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

보증연장 서비스도 보험상품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증연장 서비스는 좁은 의미로는 제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유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상

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사가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에 대해서 일정 기간의 무상보증기간이 종료한 후에 유료로 수리, 교환, 품질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는,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공하는 무상보증 서비스보다 좀 더 확대된 보증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선 단지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자나 담보 범위 등이 확대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사나 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담보 범위가 무상보증의 대상(통상 해당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 통상적 소모 및 마모 등의 경우로 한정됨)보다 확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 제품의 고장 등과 같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이라는 요소가 있고,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고, 해당 금액은 어떠한 식으로든 확률적·통계적 계산을 통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산정되었을 것이며, 서비스 제공자는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재원으로 하여 수리, 교환, 품질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⁷⁾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본다면 보험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즉, 제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유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보험상품의 개념적 요소는 갖추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자가 보증대상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사일 경우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판매한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품질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통제 범위 밖의 새로운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인데 물건 자체의 하자 및 통상적 소모 및 마모(Wear and tear)를 보장하는 것은 내재된 위험이지 우연성이 약하다는 점, 개념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규제 실익이 적은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책적으로 보험상품으로 규제할 필

7) 급부의 제공은 수리·교환 서비스 자체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수리·교환 비용의 지급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인데, 제품의 수리·교환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리·교환 비용이 보상되는 측면이 있는 것임

요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⁸⁾

2.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가.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입법 시도

과거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몇 차례의 입법 시도가 있었다.

우선 2010. 7. 23. 보험업법 개정(2011. 1. 24. 시행)을 통해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할 당시, 처음에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자 하였다. 당시 재정경제부가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일반기업의 품질보장 차원에서 실시하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수리서비스 제공계약(Warranty 계약)”에 대해 “위험보장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보험상품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는 상품”, “규제 실익이 적은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여 보험상품의 정의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보험업법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으로서 명시적으로 정해 놓으려는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⁹⁾

8) 안재홍·양승현(2011. 7)

9) (구)재정경제부(2007. 12)

〈표 II-2〉 보험업법 규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던 상품

구분	해당 상품 명		해당 상품 내용	비고
유사보험	법률 근거 있는 공제 기관	불특정 다수 대상 사업	생명, 손해 및 제3보험종목	해당 법률에서 보험업 법 적용 배제
		조합원 대상 사업	생명, 손해 및 제3보험종목	해당 법률에서 보험업 법 적용 배제 또는 조 합원 대상으로 사업 범위를 제한
	법률근거 없는 소형 공제기관		생명, 손해 및 제3보험종목	조합원 대상으로 사업 범위를 제한하거나 규 제실익이 적은 소규모 사업
	국가	우체국 보험	생명보험	해당 법률에서 보험업 법 적용 배제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 험 등 강제공영보험	일반적으로 보험업법 규율 대상이 아님
일반 기업의 복지플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복지플랜의 담보내용 중 사망보험금 또는 연금지급, 재산손해 보상, 상해 및 질병 보상 등	보험담보는 복지플랜 금부 중 일부이고 기 업 내부로 제한
기타 서비스 계약 운영주체 등	의료서비스계약		의료기관 등의 우연한 사고에 따른 의 료서비스 제공계약	규제실익이 적은 소규 모 사업
	Warranty 계약		일반기업의 품질보장차원에서 실시하 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수리서비스 제 공계약	
	Waiver 계약		렌트차량의 손상 및 도난에 대한 구상 포기 등 권리포기계약	
장의파생	CDS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준거 자산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이 발 생할 경우 손실액을 보전받는 계약	미국 보험법도 명시적 으로 제외

자료: (구)재정경제부(2007. 12), 『보험업법 개정 요강』

2015년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이 문제된 이후에도 다시 한 번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무상교환, 품질보증, 이행보증,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사후 관리에 관한 서비스보증계약”을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

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하였다.¹⁰⁾

하지만 위와 같은 두 차례의 입법 시도는 최종 법 개정 시에는 실제로 반영되지 않았다.¹¹⁾

나. 보증연장 서비스의 국내 운영 현황

국내에서 보증연장 서비스는 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에서 제공되고 있다. 상당수의 자동차 제조사·판매사들이 자동차를 사용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사용한 상태에서 보증기간 내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이 확인될 경우 주요 보증 부품을 수리 또는 교환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BMW 코리아의 워런티 플러스 등), 컴퓨터 제조사가 컴퓨터 제품의 수리 또는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손상을 담보하면서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떨어뜨림 또는 액체 흘림 포함) 또는 과전류로 인한 손상을 담보하는 경우도 있다(Dell사의 Accidental Damage Service). Apple사의 경우 각국에서 AppleCare 플랜 또는 AppleCare+ 플랜이라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AppleCare 플랜에서는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A defect in materials and workmanship)의 경우 수리 또는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며 AppleCare+ 플랜에서는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에 더하여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AppleCare 플랜만 제공되고 있다.¹²⁾

10) 금융위원회(2015. 12. 2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5-331호

11)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시도가 최종 법 개정 시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를 찾을 수 없었음

12) AppleCare+ 플랜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중국, 홍콩, 일본, 마카오, 뉴질랜드,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랍에미리트에서 제공되고 있음
(<https://www.apple.com/legal/sales-support/applecare/applecareplus/>)

한편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으로서 제공하는 사례로는 롯데손해보험이 판매하는 제품보증연장보험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하이마트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의 고장으로 발생한 수리비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품질보증의 상태·조건·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경우, 통상적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점진적인 기능 저하, 파손 및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등은 담보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감독당국 실무상으로는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유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상품)에 대하여 보험상품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 사안에서 금융위원회는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이 아닌 단순한 부가서비스라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다.¹³⁾ 이와 달리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보험상품을 허가 없이 판매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⁴⁾

13) 2015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15. 9. 14), pp. 71~72

14) 위 정무위원회 회의록; 강기정 의원실 보도자료(2015. 9. 14), “금융위, 자동차업계 보증 연장 서비스 판매 제동, 제3자 판매방식 - 보험업법 위반소지 있다”

Ⅲ. 해외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본 장에서는 영국, 일본, 미국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보험업 규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국의 법규에서 보험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각국에서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으로 규제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영국

가. 보험의 정의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은 금융업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규제대상행위(Regulated Activities)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대상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서는 하위 규정인, 규제대상행위에 대한 명령(Regulated Activities Order)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행(Effecting and carrying out contracts of insurance)이 규제대상행위에 포함된다.¹⁵⁾

여기서 보험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정의 조항에서는 장기보험계약(A contract of long-term insurance)과 일반보험계약(A contract of general insurance)을 의미한다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¹⁶⁾ 장기보험계약과 일반보험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록(Schedule)에서

15)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Article 10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부록에서도, 장기보험계약과 일반보험계약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개념을 제시하기보다는, 해당 계약의 세부 종목들을 열거하고 있다(〈표 Ⅲ-1〉 참조).

〈표 Ⅲ-1〉 영국의 보험 종목

구분	세부 보험 종목
일반보험계약	상해 보험(Accident) 질병 보험(Sickness) 육상 운송 보험(Land vehicles) 철도 운송 보험(Railway rolling stock) 항공 보험(Aircraft) 선박 보험(Ships) 운송 중 물건 보험(Goods in transit) 화재 및 자연재해 보험(Fire and natural forces) 재물 손상 보험(Damage to property) 자동차 책임 보험(Motor vehicle liability) 항공 책임 보험(Aircraft liability) 선박 책임 보험(Liability of ships) 일반 책임 보험(General liability)

- 16)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Article 3.
 (1) - “contract of insurance” means any contract of insurance which is a contract of long-term insurance or a contract of general insurance, and includes-
- (a) fidelity bonds, performance bonds, administration bonds, bail bonds, customs bonds or similar contracts of guarantee, where these are-
 - (i) effected or carried out by a person not carrying on a banking business;
 - (ii) not effected merely incidentally to some other business carried on by the person effecting them; and
 - (iii) effected in return for the payment of one or more premiums;
 - (b) tontines;
 - (c) capital redemption contracts or pension fund management contracts, where these are effected or carried out by a person who-
 - (i) does not carry on a banking business; and
 - (ii) otherwise carries on a regulated activity of the kind specified by article 10(1) or (2);
 - (d) contracts to pay annuities on human life;
 - (e) contracts of a kind referred to in article 1(2)(e) of the first life insurance directive(collective insurance etc.); and
 - (f) contracts of a kind referred to in article 1(3) of the first life insurance directive(social insurance); but does not include a funeral plan contract(or a contract which would be a funeral plan contract but for the exclusion in article 60)

구분	세부 보험 종목
	신용 보험(Credit) 보증 보험(Suretyship) 기타 재무적 손실 보험(Miscellaneous financial loss) 법률 비용 보험(Legal expenses) 지원 보험(Assistance)
장기보험계약	생명 및 연금 보험(Life and annuity) 결혼 및 출생 보험(Marriage and birth) 연계 장기 보험(Linked long term) 영구적 건강 보험(Permanent health) 톤틴 보험(Tontines) 자본 상환 보험(Capital redemption contracts) 연금 기금 관리 보험(Pension fund management) 단체 보험(Collective insurance etc.)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

자료: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Schedule 1 Contracts of Insurance

영국의 보험법(The Insurance Act 2015)과 소비자보험법(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에서도 보험이나 보험계약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은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두고 있는데(The Perimeter Guidance manual, Chapter 6, 「Guidance on the Identification of Contracts of Insurance」, 이하 “PERG”), 이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주된 개념은, 공급자(Provider)가 발생 여부 또는 발생 시기가 불확실하고 수혜자(Recipient)의 이익에 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수혜자에게 금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⁷⁾

FCA는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특히 제공자 또는 소비자의 의도·목적보다 제공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실질을 중시한다.¹⁸⁾ 또한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계약을 전체로 보아 판단한

17) PERG, Article 6.3.4

18) PERG, Article 6.5.4

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공자가 계약상 여러 종류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들 중 보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의무가 다른 의무에 비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계약 전체가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본다.¹⁹⁾

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여부²⁰⁾

보험계약의 개념에 대한 FCA의 규제 지침인 PERG에서는 보험계약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계약 유형들을 몇 가지 예시하면서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보증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PERG는 보증 서비스와 관련하여, ① 판매자·공급자가 제공하는 단순 보증 서비스와, ②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 및 확대된 보증 서비스로 구분하고, 각각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1) 단순 보증 서비스(manufacturers' and retailers' warranties)

우선 판매자·공급자가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자나 공급자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질(Quality)에 관하여 부담하는 일반적인 의무와 동일한 성질을 지닌 경우에는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FCA의 입장이다.²¹⁾

19) PERG, Article 6.5.4 및 Article 6.6.7

20) 한편 영국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 측면이 아니라 경쟁법적 측면에서의 규제도 별도로 하고 있음. The Supply of Extended Warranties on Domestic Electrical Goods Order 2005에서는, 판매자가 국내 전자 제품에 대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들(예를 들어, 판매자는 제품 가격을 게시함에 있어 관련 보증연장 서비스의 가격과 기간도 명확하게 게시해야 하고 보증연장 서비스를 다른 곳에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게시해야 함)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전자 제품에 대한 다양한 보증연장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www.compareextendedwarranties.co.uk)도 운영하도록 함. 그러나 본고에서는 보험 측면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함

21) PERG, Article 6.7.8

여기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자나 공급자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질에 관하여 부담하는 일반적인 의무와 동일한 성질을 지닌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판매자가 그러한 종류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질에 관하여 지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거나 그와 합리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종류의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계약에 따라 질 또는 적합성(Fitness)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²²⁾

2)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 및 확대된 보증 서비스 (separate warranty transactions and extended warranties)

한편 FCA는 제3자의 보증 서비스(판매자·공급자가 아닌 제3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확대된 보증 서비스(제품 또는 서비스의 질에 관한 판매자의 일반적인 의무보다 그 내용, 범위 또는 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의 경우에는, 이를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²³⁾

제3자의 보증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FCA는 해당 보증 서비스의 제공자가 판매자·공급자의 계열회사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질에 관한 판매자의 일반적인 의무보다 그 내용이나 범위가 현저히 확장된 경우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냉동고의 제조사·판매사가 단순히 냉동고의 질에 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냉동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음식 손실까지 고객에게 보상해주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2) PERG, Article 6.7.10

23) PERG, Article 6.7.11 및 Article 6.7.12

다. 소결

이처럼 영국에서는 FCA의 지침을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우선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으로 규제된다는 것이 명확하다.

한편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제조사·판매사로서 제품의 질이나 적합성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반적인 의무와 동일한 성질을 지닌 정도라면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의무보다 그 내용, 범위 또는 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Significantly more extensive in content, scope or duration)에는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가 그 내용, 범위, 또는 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

2. 일본

가. 보험의 정의

일본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에 대하여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보험(생명보험)과 일정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보험(손해보험)을 인수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⁴⁾

24) 保険業法,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保険業」とは、人の生死に関し一定額の保険金を支払うことを約し保険料を収受する保険, 一定の偶然の事故によって生ずることのある損害をてん補することを約し保険料を収受する保険その他の保険で, 第三条第四項各号又は第五項各号に掲げるものの引受けを行う事業をいう。

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여부

1) 일본 금융청의 감독지침

한편 보증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본 금융청(金融庁)의 감독지침에서는 물건의 제조·판매에 부수하여 그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고장 시 수리 등을 하는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 금융청은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의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일본 내 무인가 공제 사업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위해 「소액단기보험업자에 대한 감독지침」(少額短期保険業者向けの監督指針)을 제정하였는데,²⁵⁾ 이에 의하면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본 보험업법 제2조 제1항(앞서 살펴본 정의 조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하되,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고 발생에 관계없이 미리 금전을 징수하고 사고 발생 시 용역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정의 내용, 해당 서비스의 제공 주체·방법, 기존에 해당 서비스가 보험거래와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 보험업법의 규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물건의 제조·판매에 부수하여 그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고장 시 수리 등을 하는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²⁶⁾

25) 기존에 보험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공제 중에서 별도의 근거법이 없는 공제의 경우 무인가 공제로서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하에, 보험업법상 소액단기보험업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그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한 것임.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 규제에서는, 근거법 없이 운영되는 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진입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최저 1,000만 엔으로 낮추고,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품·자산운용 등에서 일반 보험회사와는 다른 규제와 감독을 받음

26) 「少額短期保険業者向けの監督指針」, III-1-1 無登録等業者に係る対応

(1) 無登録で保険業を行っている者等の実態把握等

(注2) 予め事故発生に関わらず金銭を徴収して事故発生時に役務的なサービスを提供す

2) 일본 금융청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 회답서

또한 일본 금융청은 금융기관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이른바 No Action Letter 제도)를 통해 수리·교환 서비스 사업의 보험업 해당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다.

수리·교환 서비스 사업이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들을 보면, 일본 금융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고 있다.

- 해당 수리·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정의 내용이 용역의 제공 또는 대상 상품과 동등한 대체품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고, 금전적인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것은 아닐 것
- 해당 수리·교환 서비스를 물건의 제조사·판매사가 직접 제공하거나, 실제 수리·교환의 수행은 물건의 제조사·판매사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수탁자)가 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물건의 제조사·판매사의 감독하에 있고 물건의 제조사·판매사에게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지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물건의 제조사·판매사가 지는 경우일 것
- 해당 수리·교환 서비스가 해당 물건의 제공에 밀접히 관련된 부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을 것
- 기존의 수리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또는 메이커 보증의 연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 책임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계리사의 관여 등 재무적 규제가 필요할 정도의 고액의 의무 제공을 예정하고 있지 않을 것

이러한 기준하에서 일본 금융청은 수리·교환 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표 Ⅲ-2) 참조).

る形態については、当該サービスを提供する約定の内容、当該サービスの提供主体・方法、従来から当該サービスが保険取引と異なるものとして認知されているか否か、保険業法の規制の趣旨等を総合的に勘案して保険業に該当す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なお、物の製造販売に付随して、その顧客に当該商品の故障時に修理等のサービスを行う場合は、保険業に該当しない。

〈표 Ⅲ-2〉 일본 금융청의 회신 사례

구분	사안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통신 회선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장비가 고장·파손된 경우(이동통신서비스 사용에 지장이 없는 파손, 도난·분실, 고객의 잘못된 사용 또는 부적절한 유지 및 관리로 인한 고장 등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됨) 이를 수리·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 - 데이터 전송 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 대하여 광 액세스 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Wi-Fi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기기가 고장·파손된 경우(광 액세스 서비스 사용에 지장이 없는 파손, 도난·분실,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됨) 이를 수리·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 - 주택설비기기를 판매하면서 고장 수리·교환 등의 보증기간을 유료로 연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 - 부동산을 시공·판매하면서 판매에 포함된 환기 팬 등의 설비기기의 고장 시 수리·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안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제조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상품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리·교환하는 서비스를 제3자가 제공한 사안(해당 제3자가 직접 제품 구매자에 대해 연장 보증 서비스의 주체가 됨)

가) 2013. 6. 19. 금융청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회답서)²⁷⁾

주택설비기기의 판매에 있어 소비자로부터 보증료를 징수하고 고장 수리·교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제 수리·교환 서비스 운영은 판매자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본 금융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① 본 서비스의 신청은 본건 제품 구입 시에 행해짐
- ② 해당 회사는 본건 제품의 판매에 있어 10년간 무료 고장 수리·교환 서비스(메이커 보증)를 제공하고 있고, 본 서비스는 본 해당 메이커 보증의 연장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볼 수 있음
- ③ 최종 사용자에 대한 본건 서비스의 책임 주체는 해당 회사로, 해당 회사 스스로가 본건 제품의 고장 수리·교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7) 金融庁における法令適用事前確認手続(回答書) 平成25年6月19日

- ④ 본건 서비스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3자(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회사는 수탁자로부터 본건 서비스의 경영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또 본건 서비스 운영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도·시정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해당 업무 위탁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어 있음
- ⑤ 기타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게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나) 2014. 3. 17. 금융청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회답서)²⁸⁾

부동산 시공·판매 시 판매에 포함된 환기 팬 등의 설비기기가 고장난 경우 수리·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운영은 판매자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본 금융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① 본건 업무에 관하여 해당 회사와 소유자 사이에 체결되는 설비기기 수리 보증 계약은 설비기기를 포함한 부동산의 시공·판매 계약 체결과 함께 체결되는 것임
- ② 본건 업무의 책임 주체는 해당 회사로 되어 있으며, 설비기기가 포함된 부동산을 시공·판매하는 A사와는 다르지만, 두 회사는 모두 B사의 자회사이고 해당 회사는 A사가 시공·판매 한 부동산에 대하여 도급 대금·구입 자금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대출 금융 사업이나 임대 보증 사업을 영위하는 등 양사(및 양사의 모회사인 B사)가 실질적으로 일체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③ 본건 업무의 운영은 해당 회사에서 C사에 업무 위탁되어 있지만, 양사는 모두 B사의 자회사이고 C사는 해당 회사의 금융 사업이나 임대 보증 사업에 따른 부동산 임대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등 양사(및 양사의 모회사인 B사)는 실질적으로 일체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④ 본건 업무 운영 중 설비 기기의 수리·교환은 C사에서 제3자인 수리업자에 재

28) 金融庁における法令適用事前確認手続(回答書) 平成26年3月17日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수리업자는 C사를 통해 해당 회사에 대하여 수리·교환 대응 상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동시에, 해당 대응이 불충분·부적절한 경우 해당 회사는 관리회사인 C사 및 수리업자에 지도를 실시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관리회사 및 수리업자의 변경 및 위탁 계약의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기타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게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다) 2016. 1. 18. 금융청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회답서)²⁹⁾

(1월 15일자 조회서에 대한 회답)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통신 회선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장비가 고장·파손된 경우 수리·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운영은 판매자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본 금융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① 본건 업무에 관한 약정의 내용은 용역의 제공 또는 대상 기기와 동등한 대체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금전적인 손실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 ② (i) 본건 업무의 운영·고객 관리 등은 제휴업체에게 위탁되는데, 제휴업체는 해당 회사의 감독하에 조회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지며 수리·교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최종 책임은 해당 회사가 지게 되기 때문에, 오로지 외부 위탁에 의해 타인으로 하여금 수리·교환 서비스를 하게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ii) 보증 대상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요한 부분이며, 보증 대상 기기에 고장·파손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하게 복귀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리성이 있다는 점, (iii) 본건 업무의 제공 대상 고객은 해당 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로, 해당 기기는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장비로 각각 한정되어 있으며, 대상 사유

29) 金融庁における法令適用事前確認手続(回答書) 平成28年1月18日

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에 지장이 없는 파손, 도난·분실, 고객의 잘못된 사용 또는 부적절한 유지 및 관리로 인한 고장 등이 제외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회사가 실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음

- ③ 가전제품 등에 관한 수리 서비스, 가전제품 등의 제조·판매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본 업무의 수리 서비스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유사한 것임
- ④ 본건 업무는 용역의 제공 또는 대체품의 제공을 1사고당 최대 4만 엔 상당을 상한으로 하고 고액의 역무 제공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책임 준비금의 적립과 보험 계약사의 관여 등의 재무 규제를 할 필요가 낮고, 기타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게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라) 2016. 1. 18. 금융청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회답서)

(1월 14일자 조회서에 대한 회답)

데이터 전송 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 대하여 광 액세스 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Wi-Fi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기기가 고장·파손된 경우 수리·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운영은 판매자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본 금융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① 본건 업무에 관한 약정의 내용은 용역의 제공 또는 대상 기기와 동등한 대체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금전적인 손실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 ② (i) 본건 업무의 운영·고객 관리 등은 제휴업체에게 위탁되는데, 제휴업체는 해당 회사의 감독하에 조회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지며 수리·교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최종 책임은 해당 회사가 지게 되기 때문에, 오로지 외부 위탁에 의해 타인으로 하여금 수리·교환 서비스를 하게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ii) 보증 대상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은 광 액세스 서비스의 제공에

중요한 부분이며, 보증 대상 기기에 고장·파손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하게 복귀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리성이 있다는 점, (iii) 본건 업무의 제공 대상 고객은 해당 회사의 광 액세스 서비스의 계약자 및 동거친족으로, 해당 기기는 광 액세스 서비스에 직접 또는 Wi-Fi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기기로 각각 한정되어 있으며, 보증 사유에서 광 액세스 서비스 사용에 지장이 없는 고장·파손, 도난·분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이 제외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회사가 실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음

- ③ 가전제품 등에 관한 수리 서비스, 가전제품 등의 제조·판매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본 업무의 수리 서비스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유사한 것임
- ④ 본건 업무는 용역의 제공 또는 대체품의 제공에 대해 상한을 설정하고 가장 비싼 TV에서도 1사고당 최대 6만 엔 상당을 상한으로 하고 고액의 역무 제공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책임 준비금의 적립과 보험 계리사의 관여 등의 재무 규제를 할 필요가 낮고, 기타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게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마) 2012. 5. 14. 금융청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회답서)³⁰⁾

제조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상품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리·교환하는 서비스를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해당 제3자가 직접 제품 구매자에 대해 연장 보증 서비스의 주체가 된 사안이었음)에 대해서는, 일본 금융청은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보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①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제품 구입자로부터 연장 보증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위탁하고 사전에 상품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30) 金融庁における法令適用事前確認手続(回答書) 平成24年5月14日

보증료를 재원으로 위탁처에 수리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② 소매 사업자가 제품 구매자에게 부담하는 연장 보증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회사가 수리 업무와 콜센터 사업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가 제품 구매자에게 직접 연장 보증의무의 주체가 됨
- ③ 소매 사업자를 대리점으로 다수의 사람에게서 고장의 위험을 인수받음으로써 위험의 집적을 도모하고, 이를 보험 기술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④ 소매 사업자 등 제품 구매자에 대하여 민사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러한 책임을 계약으로 확장하여 부담하는 경우와 달리, 이러한 책임이 없는 제3자인 해당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품 구매자로부터 상품의 고장 위험만을 인수하여 위험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본건과 같은 구조는 보험 거래와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⑤ 대리점망을 구성하여 널리 고객을 모집하고 수리 금액에 상한을 마련하지 않고 운영하는 본건 업무에 대해 보험업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다. 소결

일본에서는 물건의 제조·판매에 부수하여 그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고장 시 수리 등을 하는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금융청의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 금융청은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를 통해 수리·교환 서비스 사업의 보험업 해당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판단하고 있는데, 해당 수리·교환 서비스가 해당 물건의 제공에 밀접히 관련된 부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는지, 해당 서비스가 기존의 수리 서비스나 메이커 보증의 연장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해당 서비스가 금전적인 손실 보전을 약속하기보다는 용역의 제공 또는 대체품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재무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수리·교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실제로 고객과의 관계에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인지, 그러한 제3자가 제조사·판매사의 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업 해당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즉,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가 직접 수리·교환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가 된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실제 수리·교환 서비스를 제3자가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제3자가 물건의 제조사·판매사의 감독하에 있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제조사·판매사가 지는 경우에는 이는 제조사·판매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다.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수리·교환 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일본 금융청은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파손에 대하여 수리·교환을 해주는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제공에 밀접히 관련된 부수적인 거래로서 보험업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다(일본 금융청 회답서 중 이동통신서비스 장비 사안, 데이터 전송 기기 사안).³¹⁾ 다만 해당 제품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파손, 도난·분실, 고객의 잘못된 사용 또는 부적절한 유지 및 관리로 인한 고장 등은 보험이 아닌 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³²⁾

31) 2016. 1. 18. 금융청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회답서) 사안

32) 일본 금융청이 보험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서 “보증 사유에서 서비스 사용에 지장이 없는 파손, 도난·분실, 고객의 잘못된 사용 또는 부적절한 유지 및 관리로 인한 고장 등이 제외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3. 미국

가. 보험의 정의

미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방 당사자(보험회사)가 상대방 당사자(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고 당사자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³³⁾

과거 미국의 판례와 학설에 의하면, 미리 대가를 지급받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제공계약이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 등이 논의되었다.³⁴⁾

1) 손해보상성 기준

용역제공계약이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용역제공의 목적이 손해보상(Indemnity)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제3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을 전보하는 경우라면 손해의 보상이므로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아니라 단순한 용역제공계약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용역의 제공 약정은 그 주된 목적이 단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기보다는 의료용역 제공 자체에 있다고 보아 보험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³⁵⁾

33) John S Pruitt(2016)

34) 한기정(2015, 12)

35) Jordan v. Group Health Association, 107 F.2d 239(1939)

2) 통제범위 기준

담보하는 사고가 용역제공자의 통제(Control)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이다. 물건을 판매하는 자가 물건의 하자에 대해 수리·교체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위험이 판매자의 통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이 아니라고 본다. 만약 물건의 하자 이외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수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위험은 판매자의 통제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보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제조자가 자동차의 하자를 수리해주겠다는 약정은 제조자의 통제 범위 내의 위험이기 때문에 단순한 품질보증에 불과할 뿐 보험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고,³⁶⁾ 한편 타이어의 판매자가 타이어의 바람빠짐, 찢김, 흠 등에 대해 수리·교체해주겠다는 약정은 바람빠짐 등이 판매자의 통제범위 밖의 위험이기 때문에 보험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³⁷⁾

3) 주된 목적 기준

용역제공계약의 주된 목적(Purpose)이 보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이다. 용역제공계약에 보험의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용역제공계약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Incidental) 수준이라면 보험으로 보지 않으며, 주된 목적이 보험인 경우에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자동차가 양호한 운행 능력 상태에 있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화물자동차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라 주차공간의 제공, 자동차세 지급, 정기적인 세차 및 도색, 자동차에 손상 발생 시 수리 제공 등의 의무를 부담한 경우, 자동차 손상 시 수리 제공 부분은 보험 요소가 있지만 자동차 관리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해당 계약의 주

36) Rayos v. Chrysler Credit Corp., 683 S.W. 2d 546(1985)

37) State ex rel. Duffy v. Western Auto Supply Co., 134 Ohio 163(1938)

된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계약은 보험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³⁸⁾

4) 규제필요성 기준

보험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이며, 보험자의 불완전판매, 지급능력 부족, 불공정한 보험료 등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보험규제의 목적이라고 본다. 보험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하여 언제나 보험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보험규제의 이유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 자재를 판매하는 자가 그 하자에 대해서 수리·교체를 약정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시공 실수로 지붕이 새는 경우에 이를 수리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그 부수적 수리 약정을 보험으로 규제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보험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³⁹⁾

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여부

1) 서비스계약 모델법(Service Contracts Model Act)

미국에서도 보증연장 서비스계약이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고, 이에 1995년에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이하 “NAIC”)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은 아닌 것으로 취급하되 다만 해당 서비스 업계를 주 보험감독당국의 감독하에 두기로 입장을 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서비스계약 모델법(Service Contracts Model Act)을 마련하였다.⁴⁰⁾

38) Transportation Guarantee Company, Ltd. (A Corporation) v. Jellins, 29 Cal. 2D 242(1946)

39) GAF Corporation v. Country School Board of Washington County, 629 F. 2d 981(1980)

40) 한편 1975년에 보증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Magnuson-Moss Warranty Act가 제정되었는데, 이는 주로 보증인이 보증 조건 등을 상세하게 공시할 의무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보험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표 Ⅲ-3〉 NAIC 서비스계약 모델법의 구성

조항	내용
Section 1	적용 범위 및 목적(Scope and Purposes)
Section 2	정의(Definitions)
Section 3	사업 영위 요건(Requirements For Doing Business)
Section 4	보험 관련 공시의무(Required Disclosures -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Section 5	서비스계약 관련 공시의무(Required Disclosures - Service Contracts)
Section 6	금지행위(Prohibited Acts)
Section 7	자료보존의무(Recordkeeping Requirements)
Section 8	보험의 해지(Termination of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Section 9	보험회사의 의무(Obligation of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Insurers)
Section 10	규제 조항(Enforcement Provisions)
Section 11	규정 제정 권한(Authority to Develop Regulations)
Section 12	분리가능성 조항(Separability Provision)

서비스계약 모델법은 서비스계약 판매에 관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마케팅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함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⁴¹⁾

가) 서비스계약 모델법의 적용 범위

서비스계약 모델법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계약은,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고 특정 기간 동안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A defect in materials, workmanship) 또는 통상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r)에 기인한 운영상 또는 구조상 결함의 경우에 해당 재물을 수리, 교체, 유지하거나 수리, 교체, 유지에 관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한다.⁴²⁾

동법은 서비스계약과 단순 워런티(Warranty)를 구별하고 있다. 제조사, 수입업자 또는 판매사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대상 제품의 판매와 별도로 협상하거나 분리되지 않고 그 판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면서 부품의 하자, 기계적 또는 전

41) Nat Pope et al.(2014)

42) Section 2, M

기적 고장에 관하여 보상하거나 수리 또는 교체 등의 구제 조치를 보증하는 약정은 단순 워런티에 해당한다고 하여⁴³⁾ 단순 워런티의 경우에는 서비스계약 모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계약이라 하더라도 대상 재물의 매매 시점 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체결되고 해당 재물의 가격이 주 보험감독당국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한편 제조사⁴⁴⁾의 서비스계약의 경우, 서비스계약 모델법상의 모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규정(공시의무 중 일부 조항, 보험 명칭 사용의 제한 조항, 구속 조건부 거래 금지 조항, 주 보험감독당국의 감독 권한 조항)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다만 제조사의 서비스계약에 대해 서비스계약 모델법의 적용을 전면 배제할지 여부는 각 주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다.⁴⁵⁾

나) 서비스계약에 대한 규제

서비스계약 모델법은, 동법상의 서비스계약에 대해 보험법규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계약을 판매, 제공하는 자는 보험법규상 인가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⁴⁶⁾

다만 서비스계약의 관리인(Administrator)⁴⁷⁾은 주 보험감독당국에 등록(Registration)을 하여야 한다.⁴⁸⁾

43) Section 2. O

44) 서비스계약 모델법상 '제조사(Manufacturer)'에는, 실제로 해당 재물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본인 명의 또는 상표로 판매하는 자뿐만 아니라, 제조 또는 생산하는 자의 100% 자회사 또는 100% 모회사, 해당 재물을 직접 제조 또는 생산하지는 않지만 해당 재물을 본인의 상호·상표로 판매하는 자, 타인의 상호·상표로 판매되는 재물을 직접 제조 또는 생산하는 자 등이 포함됨(Section 2. E)

45) Section 1. C

46) Section 1. A의 Drafting Note 및 Section 3. E

47) 서비스계약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서비스 제공 의무자와 동일인일 수도 있고 계열회사인 경우도 있고 독립사업자인 경우도 있음

48) Section 3. B

또한 서비스계약 모델법은 서비스계약에 따른 충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무적 규제를 하고 있다. 즉, 서비스계약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① 인가받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을 체결하거나, ② 보유 중인 서비스계약에 의한 총 수입(Gross consideration received)에서 기지급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준비금(Reserve)을 유지하면서⁴⁹⁾ 보유 중인 서비스계약에 의한 총 수입에서 기지급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의 5% 또는 25,000 달러 중 높은 금액 이상의 금액을 주 보험감독당국에 예치하거나, ③ 1억 달러 이상의 순 자산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⁵⁰⁾

또한 서비스계약은 일정 사항을 기재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서비스계약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읽기 쉽게(1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기재해야 하고, 서비스계약이 보험계약으로 담보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과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불이행 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보험계약으로 담보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수리를 위해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 자기부담금, 제한 또는 면책 요건, 해지에 관한 사항, 간접손해가 담보되는지 여부 등을 서비스계약상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⁵¹⁾

서비스계약 제공자는 보험이나 보험으로 오인될 수 있을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서비스계약의 판매 또는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리고 은행, 대출기관, 제품의 제조사·판매사는, 서비스계약의 구입이 대출이나 해당 제품의 구입의 조건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⁵²⁾ 서비스계약 관리인은 거래와 관련한 정확한 회계장부, 서류 및 기록(서비스계약서 사본, 고객의 이름 및 주소, 서비스계약 제공자 주소, 청구 관련 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담보가 끝난 기간으로부터

49) 해당 준비금 계정은 주 보험감독당국의 검사 대상이 됨

50) Section 3. C

51) Section 5

52) Section 6

터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진다.⁵³⁾

한편 서비스계약이 보험계약으로 담보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계약 모델법은 해당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는데, 즉 해당 보험회사는 서비스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⁵⁴⁾

주 보험감독당국은 서비스계약 제공자, 서비스계약 관리인, 보험회사 등에 대해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Civil penalty)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관련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⁵⁵⁾

다) 서비스계약에 관한 각 주별 입법례

서비스계약에 관한 입법례는 각 주별로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표 Ⅲ-4〉 참조).⁵⁶⁾

〈표 Ⅲ-4〉 서비스계약에 관한 미국 각주별 입법례 유형

유형	주
제1유형	Alabam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Hawaii, Idaho, Illinois, Iowa, Louisiana, Maine, Maryland,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Oklahoma, Oregon, South Carolina, Texas, Utah, Vermont, Washington, Wyoming
제2유형	Alaska, Colorado, Connecticut, Georgia, Kansas, Kentucky, Massachusetts, Montana, North Dakota, Ohio,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제3유형	Delaware, Washington DC, Indiana, Michigan, New Jersey, Pennsylvania, South Dakota, Tennessee, Rhode Island
제4유형	Florida

자료: Nat Pope et al.(2014), "Extended Warranties in the U.S. Marketplace: A Strategy for Effective Regulation",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33, No. 3

53) Section 7

54) Section 8

55) Section 10 및 Section 11

56) Nat Pope et al.(2014). 한편 동 자료에서는 Rhode Island에 대한 입법례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Rhode Island 역시 서비스계약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주로서 Category 3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제1유형은, 적어도 한 분야(자동차, 주거용 또는 가정기기용 서비스계약)에 있어서 NAIC의 서비스계약 모델법을 대부분 수용한 주로서, 미국 50개 주 중 28개 주가 이에 해당한다.

제2유형은, NAIC의 서비스계약 모델법을 제한적으로만 수용한 경우이다. 서비스 계약에 대해 보험법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정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서비스계약 모델법상 서비스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각종 규제(등록 의무, 재무적 책임 관련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13개 주가 이에 해당한다.

제3유형은 서비스계약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주로서, 8개 주와 DC의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플로리다(Florida) 주의 경우에는 서비스계약에 대해 가장 종합적인 규제 법률을 두고 있는 주로서, 보험법규 안에 별도의 장을 두어 서비스계약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Florida Statute Chapter 634). 여기서는 보증 서비스의 대상 제품별로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제1편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계약(Motor Vehicle Service Agreement Companies), 제2편에서는 주택 및 주택과 함께 판매되는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서비스계약(Home Warranty Associations), 제3편에서는 기타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에 대한 서비스계약(Service Warranty Associations)을 각각 규율한다.

Florida Statute Chapter 634의 규제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서비스계약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순자산, 경영능력 등 기준)을 갖추고 주 보험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무적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총 수입보험료의 일정 비율⁵⁷⁾ 이상을 적립금으로 유보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서비스계약 제공자는 매년 주 보험감독당국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 보험감독당국은 정기적으로 서비스계약 제공자를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계약 제공자는 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에 투자하거나 자금 대여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플로리다 주의 입법례는 서비스계약 제공자에 대해 NAIC의 서비스계약 모델법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각 주별로 NAIC의 서비스계약 모델법을 적용하거나 서비스계약을 규율함에

57) Motor Vehicle Service Agreement Companies의 경우 50%, Home Warranty Associations와 Service Warranty Associations의 경우 25%임

있어 서비스계약의 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 NAIC의 서비스계약 모델법상의 서비스계약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 또는 통상적인 마모에 기인한 운영상 또는 구조상 결함(The operational or structural failure due to a defect in materials, workmanship or normal wear and tear)’을 담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주에 따라 동 범위를 확대하여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도 서비스계약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뉴욕 주 보험법에서는 서비스계약의 정의에 대해 NAIC 서비스계약 모델법상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이에 덧붙여 서비스계약이 전압 급상승(Power surges) 및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해당 재물을 수리, 교체, 유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⁵⁸⁾ 미주리 주, 네바다 주, 메릴랜드 주, 아칸소 주, 아이다호 주, 오리건 주, 일리노이 주 등에서도 서비스계약으로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⁵⁹⁾

플로리다 주에서도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에 대한 서비스계약에 대해 규율하는 Florida Statute Chapter 634 제3편에서 동 법의 규제 대상인 서비스계약에 대해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 또는 통상적인 마모뿐만 아니라 전압 급상승(Power surges),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으로 인한 운영상 또는 구조상 결함에 대해 수리, 교체, 유지하거나 수리, 교체, 유지에 관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약정

58) N.Y. Ins. Law §7902 (k) “Service contract” means a contract or agreement, for a separate or additional consideration, for a specific duration to perform the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of property, or indemnification for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due to a defect in materials or workmanship or wear and tear, with or without additional provision for indemnity payments for incidental damages, provided any such indemnity payment per incident shall not exceed the purchase price of the property serviced. Service contracts may include towing, rental and emergency road service, and may also provide for the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of property for damage resulting from power surges and 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59) 뒤에서 살펴보듯이, 이 외에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관련 입법례에서도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 등을 담보하는 서비스계약을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음

으로 정의하고 있다.⁶⁰⁾ 다만 플로리다 주 보험법상 서비스계약으로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의 계약배상책임보험(Contractual liability policy)에 가입할 것이 요구된다.⁶¹⁾

원칙적으로 서비스계약은 도난, 분실 및 외부적 요인(External cause)으로 인한 손해나 손실은 담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의 경우에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계약으로 담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이라는 것은 해당 물품을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사용(Normal and customary use)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에 대한 담보는 하자(Defect)로 인한 담보에 부수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담보 기간 및 범위가 하자 담보보다 크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⁶²⁾

2)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관련 법규(Portable Electronics Insurance Laws)

한편 미국의 다수 주에서는 휴대용 전자제품을 담보하는 보험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는 법규를 두고 있는데(Portable Electronics Insurance Laws),⁶³⁾ 동 법규상 휴대용

60) Fla. Stat. §634. 401 (13) "Service warranty means any warranty, guaranty, extended warranty or extended guaranty, maintenance service contract equal to or greater than 1 year in length or which does not meet the exemption in paragraph (a), contract agreement, or other written promise for a specific duration to perform the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of a consumer product, or for indemnification for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for operational or structural failure due to a defect in materials or workmanship, normal wear and tear, power surge, or 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in return for the payment of a segregated charge by the consumer." 한편 제1편의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계약(Motor Vehicle Service Agreement Companies)과 제2편의 주택 및 주택과 함께 판매되는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서비스계약(Home Warranty Associations)의 담보 범위에는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이 포함되지 않음.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중소형 전자제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인 것으로 이해됨

61) Fla. Stat. §634. 401 (13)(C) "All contracts that include coverage for 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must be covered by the contractual liability policy referred to in s. 634.406(3)."

62) General Counsel Opinion 1-12-2006(#2), NY General Counsel Opinion No. 1-12-2006 (NY INS BUL)

63) Janet L. Kaminski Leduc(2013. 8. 14)에 의하면 Alaska, Connecticut, Iowa, Maine,

전자제품 보험의 범위에서 서비스계약을 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에서는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에 대해 “분실, 도난 및 기계적 결함·고장·파손 또는 기타 유사한 손실 원인에 기인한 작동불능 중 하나 이상에 대해 휴대용 전자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 전압 급상승 또는 통상적인 마모로 인한 운영상 또는 구조상 결함에 대해 해당 재물에 대한 수리, 교체, 유지에 한정된 담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계약 또는 연장보증은 제외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⁶⁴⁾ 델라웨어 주, 뉴저지 주, 로드아일랜드 주, 루이지애나 주, 웨스트 버지니아 주, 뉴햄프셔 주 등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다.

다. 소결

미국 NAIC 서비스계약 모델법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일정 정도 주 보험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즉 주 보험감독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고, 서비스계약에 따른 충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 영업행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금지 행위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한편 제품의 제조사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시의무, 주 보험감독당국

Massachusetts, Montana, New York, North Dakota, Texas, Wyoming의 10개 주를 제외한 40개 주 및 DC가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관련 법규를 두고 있음

64) North Carolina (N.C.G.S.) § 58-44A-1. “Portable electronics insurance. - Insurance providing coverage for the repair or replacement of portable electronics which may provide coverage for portable electronics against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auses of loss: (i) loss, (ii) theft, and (iii) inoperability due to mechanical failure, malfunction, damage, or other similar causes of loss. The term does not include the following:
a. A service contract or extended warranty providing coverage limited to the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of property for the operational or structural failure of the property due to a defect in materials, workmanship, 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power surges, or normal wear and tear.”

의 감독 권한 등 일부 규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이 아닌 서비스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는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마모로 인한 경우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되, 주별 입법례에 따라서는 이에 더하여 해당 제품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의 경우에도 보험이 아닌 서비스계약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경우도 많다.⁶⁵⁾

65) 최근에는 서비스계약에 대한 규제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음. 보증연장 서비스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동시에 판매되기 때문에 이른바 상황적 독점(Situational monopoly)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단순히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의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영국의 사례와 같이 소비자 등이 쉽게 다양한 보증연장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들고 나아가 해당 제품의 판매와 동시에 보증연장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함. 또한 보증연장 상품의 내용을 단순화·표준화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각 주별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정도나 내용이 상이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차원에서 규제 기관(예컨대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또는 Federal Trade Commission 등)이 이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함(Nat Pope et al.(2014))

IV.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으로 규제할 것인지를 정하고 나아가 이를 법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

제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상품과 경계가 모호한 상품이다. 개념적으로는 우연성, 위험보장 목적 등 보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보험의 요소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상품이라고 하여 이들을 모두 보험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판매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행 보험업법상으로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는 보험상품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 상품으로 허용을 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상품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법규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상품과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도 감독당국의 지침 또는 법규를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과의

구분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해 놓음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감독당국 실무상으로는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즉, 보증연장 서비스의 제공자가 제품의 제조사·판매사에 한정되며, 그 담보 범위가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와 같은 경우로 한정됨)의 경우에는 보험이 아닌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을 생각해 보면, 우선, 현재 실무적으로 보험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서,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⁶⁶⁾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겠다(제1안).

또는, 좀 더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 상품으로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인정해주고 이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제2안).

가. 제1안 -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에도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 또는 보험업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법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2015년에 금융위원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무상교환, 품질보증, 이행보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후 관리에 관한 서비스보증계약”을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⁶⁷⁾

66) 여기서 보험상품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아닌 자도 단순 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님

67) 다만, 당시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문구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자를 주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제조자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하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소모 및 마모의 경우도 포함시키고, ‘무상’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이는 현행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는 수준을 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어서, 보험시장이나 보증연장 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불안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에 명시된 범위의 보증연장 서비스 외의 경우에는(예컨대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 또는 제품의 파손 등을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 허가 없이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제2안 - 넓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한편, 현재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는 범위보다 좀 더 확대하여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서 허용하고 이를 법규에 명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제품의 제조사·판매사 외에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 또는 제품의 파손 등을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에도 보험이 아닌 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는 것이다.

제2안의 기대 효과로는, 보다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이 개발·판매됨으로써 보증연장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편익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에 대한 보증의 연장선 또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에는 새로운 위험의 인수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파손의 경우에는 외부적인 우연한 사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확대된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험상품으로서의 성격이 증대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규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닌지와 같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표 IV-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비교

구분	내용	고려사항
제1안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함	•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증연장 서비스 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 • 현행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는 수준을 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정도로,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제2안	넓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제공사 또는 담보 범위 측면에서 확대됨)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함	•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안 제거 •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음 • 보험 규제 필요성, 보험회사와의 규제 차익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2. 주요 쟁점

가. 제1안 관련 쟁점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할 때, 그러한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서 일부 규제라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에 대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자나 공급자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질에 관하여 부담하는 일반적인 의무와 동일한 성질을 지닌 경우

에는 보험계약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⁶⁸⁾ 일본의 경우에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한편 미국 NAIC의 서비스계약 모델법에 의하면, 제품의 제조사 등이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서, 주 보험감독당국에 대한 등록 의무나 재무 요건 규제 등은 적용하지 않지만, 공시의무 등의 일부 규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각 주의 자율 판단에 따라 해당 규제들을 전부 적용 배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표 IV-2〉 참고).

〈표 IV-2〉의 규제 내용 중 공시의무, 즉 서비스계약상 명확히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보험 규제라기보다는 일반 소비자 보호 차원의 규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때문에 보험으로서 규제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소비자계약의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두고 있는 규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내용과 성격의 규제를 하고자 한다면, 보험업법에서 보험 규제로서 별도로 적용하는 방법 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지행위 규제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⁶⁹⁾

다만 서비스계약 제공자 등에 대해 주 보험감독당국이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하고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의 측면에서 규제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유사한 규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지 여부는 시장 상황이나 규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일 것이다.

68)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영국 내 전자 제품에 대한 보증연장 서비스와 관련하여 경쟁법적 측면에서는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음(각주 16 참고)

69) 예를 들어 보증연장 서비스계약의 구입을 해당 제품 구입의 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이른바 끼워팔기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5. 가)

〈표 IV-2〉 서비스계약 모델법상 제조사에 대한 규제

구분	조항	내용
공시의무	Section 5.A	• 서비스계약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읽기 쉽게 기재해야 함
	Section 5.D	• 서비스계약상 관리인, 서비스 제공 의무자, 판매자 등을 표시해야 함
	Section 5.E	• 서비스계약상 가격, 계약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Section 5.F	• 보상청구에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절차, 응급수리 절차에 대해 서비스계약상 명확히 기재해야 함
	Section 5.G	• 서비스계약상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Section 5.H	• 서비스계약상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그에 대한 제한 또는 면책 요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Section 5.I	• 서비스계약상 제조자의 원부품이 아닌 부품이나 대체물의 사용이 허용되는 조건을 기재해야 함
	Section 5.J	• 서비스계약의 이전에 관한 조건, 제한을 기재해야 함
	Section 5.K	• 소비자의 서비스계약 해지에 관한 조건, 제한을 기재해야 하며, 서비스계약 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15일 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함
	Section 5.L	• 서비스계약상 소비자는 서비스계약 발송일로부터 20일(서비스계약이 구매 시 인도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함
	Section 5.M	• 서비스계약상 소비자의 의무 사항(추가 손해를 방지할 의무 등)에 대하여 기재해야 함
	Section 5.N	• 서비스계약은 간접손해 또는 기존조건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함
금지행위	Section 6	• 서비스계약 제공자는 보험이나 보험으로 오인될 수 있을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 • 서비스계약 제공자는 서비스계약의 판매나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 • 서비스계약의 구입이 제품 구입의 조건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됨
규제 조항	Section 10	• 주 보험감독당국은 서비스계약 제공자, 서비스계약 관리인, 보험회사 등에 대해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음

생각건대, 제조사·판매사가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제조·판매한 제품의 질이나 기능을 담보하는 보증의 연장선상이나 부가서비스로 인정해줄 여지가 있고, 그 담보 내용도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로서 우연성·외래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현재 실무상으로도 별다른 규제 없이 부가서비스로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별도의 보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만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 시장 현황을 지켜보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규제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⁷⁰⁾

나. 제2안 관련 쟁점

1) 확대 범위의 문제

보험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로서의 보증연장 서비스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가) 제공자 측면

우선,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이 아닌 것으로 허용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에 한정하여 담보하는 것으로 하되(담보 범위 자체가 확장되는 경우는 나)항에서 후술함) 다만 해당 서비스를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지의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FCA는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제조사·판매사의 계열회사인 경우도 포함됨)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서도 기본적으로 물건의 제조·

70) 다만 이 경우,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는 점에서, 보험 측면에서 규제할 것인지 경쟁법 측면에서 규제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임

판매에 부수하여 수리 등의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를 보험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고, 제3자가 독립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⁷¹⁾ 다만, 실제 수리·교환 행위 자체는 제3자가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3자가 물건의 제조사·판매사의 감독하에 있고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물건의 제조사·판매사가 지는 경우에는, 이는 물건의 제조사·판매사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보험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일본 금융청의 입장이다.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제공 주체를 제조사·판매사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 NAIC의 서비스계약 모델법에 의하면 제3자도 보험이 아닌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주 보험감독국에의 등록 의무, 재무적 요건에 관한 규제, 영업행위 관련 규제 등을 받게 된다.

생각건대, 만약,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해주는 이유가 오직 그 담보 내용이 보험상품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는 점(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우연성·외래성이 약하다는 점) 때문이라면,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경우와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보험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규율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단지 그 담보 내용이 보험상품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특수성으로 인한 측면, 즉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보증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제조·판매한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에 대한 담보의 연장선상에서 또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독립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한 담보의 연장선상이나 부가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제품의 질이나 기능

71) 한편 제3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건의 판매사와 동일 법인은 아니지만 계열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양사가 일체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음(2014. 3. 17. 금융청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회답서) 사안)

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품 구매자들로부터 고장 등의 위험을 인수하고 이를 집적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보험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이다. 만약 시장에서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화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보험의 성격이 강한 제3자 제공의 경우까지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서 인정해줄 유인은 크지 않아 보인다.⁷²⁾

다만, 일본의 사례처럼, 실제로 수리·교환이라는 행위 자체는 제3자가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서비스 제공 주체 및 책임 주체는 제조사·판매사이고 제조사·판매사가 서비스의 이행 과정에서 수리·교환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한 것으로서 해당 제3자가 제조사·판매사의 감독하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담보 범위 측면

현재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는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에서는 통상적 소모·마모나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은 담보할 수 있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는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의 경우에는 제품 자체의 내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파손의 경우에는 그 사고가 제품의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의 경우보다 우연성·외래성이 높기 때문이다.

72) 물론,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을 활성화할 필요성 등이 대두되고 이를 위해 제조사·판매사 외에 다양한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생긴다면, 제3자의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 허용에 대해 재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특히 보증연장 서비스의 제공자를 제조사·판매사로 한정하는 경우 보증연장 서비스 시장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예컨대 시장 독점으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제품의 제조사·판매사의 경우 이미 판매된 제품의 보증연장 서비스보다는 신상품 매출의 증대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더 클 수 있음),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자를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겠음

그러나 개념적으로 고장과 파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의 하자과 외부적 요인이 결합하여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휴대용 전자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떨어뜨려서 제품이 파손된 경우를 가정해 보면, 이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파손으로 볼 소지도 있지만, 그 정도의 충격을 견딜 만한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제품 자체의 하자으로 인한 파손으로 볼 소지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휴대전화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휴대폰보험으로 담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휴대폰보험에서는 보험목적물인 휴대폰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도난, 분실, 파손)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면서, ‘보험목적물의 내재적인 결함에 따른 전기적 또는 기계적 고장’, ‘보험목적물의 성능저하 또는 성능미달’, ‘보험목적물의 점진적인 마모, 노후화’ 등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휴대폰 파손의 경우, 점진적인 마모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되는 사례들도 많다는 것이다(〈표 IV-3〉 참조).⁷³⁾

〈표 IV-3〉 휴대폰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내용	건수	비율
분실	현물보상시 대체기종 불만	45	21.95
	과도한 자기부담금 불만	45	21.95
	처리지연에 따른 불만	40	19.51
	기타	36	17.56
	통화이력 부존재로 인한 면책	18	8.78
	해외사고에 따른 면책	12	5.85
	번호 이동 등에 따른 면책	9	4.39
	소계	205	75.09
파손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24	35.29
	기타	16	23.53
	처리지연 등	14	20.59
	과실책임에 따른 면책·삭감	10	14.71
	사설업체 수리에 따른 면책	4	5.88
	소계	52	19.05

자료: 한국소비자원(2013. 12), 「휴대폰 분실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73) 한국소비자원(2013. 12)

이처럼 파손과, 제품의 내재적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나 마모 등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보험으로도 담보 여부가 불투명하고 보증연장 서비스로도 담보 여부가 불투명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에 의하면, 우선 영국에서는 제품의 제조사·판매사의 일반적인 의무보다 그 내용이나 범위가 현저히 확장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파손의 경우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제조사·판매사의 일반적인 의무보다는 그 내용이나 범위가 현저히 확장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즉 보험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⁷⁴⁾

일본에서는 일본 금융청 회신 사례들을 보면 해당 제품의 정상적 사용에 지장이 있는 파손의 경우에는 보험이 아닌 보증연장 서비스로 담보할 수 있는 범위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⁵⁾ 다만 해당 제품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파손이나 도난, 분실의 경우에는 담보 범위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계약 모델법에서는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로 인한 경우를 담보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지만, 주별 입법례에 따라 이에 더하여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ADH")'을 보험이 아닌 서비스계약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파손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의 경우보다는 우연성·외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의 경우(예를 들어 휴대용 전자제품을 떨어뜨리거나 휴대용 전자제품에 물을 쏟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에 있어 그 발생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오직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도난이나 분실보다는 우연성·외래성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품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와 구분하기 어려워서 보험

74) 실제로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담보하는 AppleCare+ 플랜의 경우, 영국에서는 Apple의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Accidental damage를 담보하는 AIG의 보험상품으로서 제공되고 있음

75) 일본에서는 AppleCare+ 플랜이 Apple의 서비스로 제공됨

으로의 담보 여부가 불투명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적 결정에 따라, 보증연장 서비스로 담보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일 것이다.

2) 규제 수준의 문제⁷⁶⁾

보증연장 서비스를 확대하여 인정하는 방안을 취한다면, 현재 인정되고 있는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보다는 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좀 더 가지는 경우이고, 또한 서비스가 확대 적용됨으로 인하여 시장 규모나 서비스 가액 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증연장 서비스의 운영 또는 그 제공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확대 범위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보험의 성격을 일정 정도 또는 상당히 가지고 있는 보증연장 서비스나 그 제공자에 대하여 보험 측면에서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와의 규제 차이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연장 서비스의 담보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시장 규모나 서비스 가액 등이 증가한다면, 서비스 이행 담보 및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확대된 보증연장 서비스 또는 그 제공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내용과 수준의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서비스계약 모델법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서비스계약 모델법에서는 서비스계약상 충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76)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하여 실제로 규제를 하고자 한다면,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하여 보험 측면에서 어떠한 내용과 수준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의 문제 외에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경쟁법적 측면에서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인지,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에 대한 주관 부처는 금융위원회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보험 측면에서 규제를 한다면 이를 보험업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것인지, 보증연장 서비스 외에 보험계약과의 구분이 모호한 다양한 서비스계약을 통합하여 규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할지 등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임

재무적 요건 규제로서, 서비스 제공 의무자로 하여금 ① 보험계약에 가입하거나, ② 일정액의 준비금을 보유하면서 주 보험감독당국에 일정액을 예치하거나, ③ 순 자산을 일정액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향후 보험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확대된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좀 더 가미된 경우이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자의 재무 상황 등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서비스계약 모델법 사례처럼, 서비스계약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⁷⁷⁾ 우리나라 여타 법령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들이 있으며(전자금융거래법 등),⁷⁸⁾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해볼 수 있겠다.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계약상 기재사항이나 광고 등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미국 서비스계약 모델법상으로도 서비스계약의 중요한 계약 조건들에 대해 고객이 알 수 있게 계약상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계약상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서비스계약 모델법에서는 서비스계약 관리인으로 하여금 주 보험감독당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 보험감독당국이 서비스계약 관리인, 제공자 등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신고 또는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대되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내용이 보험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얼마나 많이 가

77) 이에 더하여 지급여력비율 규제 등까지 적용할지 여부는, 보증연장 서비스 시장 현황 및 규모,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78)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고 있는지, 시장 현황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⁷⁹⁾

한편, 보험 측면에서의 규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상조업에 대한 규제 선례도 일응 참고해볼 수 있다.

상조업은 장례에 관한 일체의 용역 및 물품 등을 포함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0년 이전에는 상조업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상 장의행사와 같은 역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대법원 87도565 판결) 보험으로서의 규제를 받지 않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규율될 뿐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 상조업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여 상조회사와 가입회원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허위·과장광고, 계약해지 거절, 계약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상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0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상조업을 규율하게 되었다.⁸⁰⁾

〈표 IV-4〉 설립연도별 상조서비스업체 및 회원 수 증가 추이

(단위: 개, 천 명)

연도별	1982~ 1990	1991~ 2000	2001~ 2004	2005	2006	2007	2008	기타 ¹⁾	계
업체 수 (%)	5 (1.8)	29 (10.3)	59 (21.0)	53 (18.9)	50 (17.8)	41 (14.6)	38 (13.5)	6 (2.1)	281 (100.0)
회원 수 (%)	276 (10.4)	911 (34.3)	839 (31.6)	400 (15.0)	144 (5.4)	67 (2.5)	16 (0.6)	3 (0.1)	2,656 (100.0)

주: 1) 설립연도 미기재업체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09. 12. 31), 「상조서비스 피해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정책보고서』, 제3호

79) 그 밖에 우리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모집행위 규제, 자산운용 규제, 기초서류 규제 등의 경우에도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 시장 현황 및 규모,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80) 2010. 3. 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2010. 9. 18. 시행)

〈표 IV-5〉 연도별 상조서비스 피해유형

(단위: 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
광고	1	-	-	-	3
약관	2	8	10	7	23
품질	2	2	6	12	44
계약해제(해지)	132	312	458	932	1,210
부당행위	35	83	168	178	194
거래관행	6	42	49	55	43
제도	13	14	5	18	14
가격, 요금	19	19	112	90	38
계약이행	2	18	14	55	43
기타	7	11	11	29	35
계	219	509	833	1,376	1,647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09. 12. 31), 「상조서비스 피해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정책보고서』, 제3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조업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상조업자는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상조업자는 매년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회계감사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상조업자 또는 상조서비스 계약 모집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일정한 내용(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서비스의 공급 방법 및 시기, 서비스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상조업자는 선수금의 보전을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공제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또는 금융기관과의 예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자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상조업의 경우 앞서도 언급하였듯 보험 측면에서의 규제는 아니며, 그 규제의 주관 부처도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이다.⁸¹⁾ 그러나 어떠한 시장 상황하에서 상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수준과 내

용의 규제를 도입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참고해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맺음말

현재 시장 및 감독당국 실무상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보장하는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험이 아닌 단순한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이러한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험상품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불안을 없애고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구분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 등에 따라 보험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있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의 경우에는 우연성·외래성이 약하다는 점, 보증연장 서비스의 일환으로 담보하는 것이 소비자 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 점,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보증연장 서비스 담보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보증연장 서비스의 담보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있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일정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어퍼

81) 상조업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아닌 경쟁당국에서 규제하기로 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역무로서 제공되는 상조업의 경우에는 보험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 상조업에 대해 경쟁당국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추측됨. 한편 최근에는 보다 전문성 있는 조사·검사를 위하여 상조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음(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052호)

한 형태와 범위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는 해당 상품의 내용과 거래 구조, 서비스 가액 및 시장 규모,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재무건전성 규제 필요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재정경제부(2007. 12), 『보험업법 개정 요강』
- 국회입법조사처(2009. 12. 31), 「상조서비스 피해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정책 보고서』, 제3호
- 금융위원회(2015. 12. 2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31호
- 안재홍·양승현(2011. 7), 「개정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정의에 관련된 이슈 검토」, BFL 제48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2015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15. 9. 14), pp. 71~72
- 한기정(2015. 12), 「보험업의 개념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제9권, 제2호
- 한국소비자원(2013. 12), 『휴대폰 분실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 Janet L. Kaminski Leduc(2013. 8. 14), “Portable Electronics Insurance”, *OLR Research Report*
- John S Pruitt(2016), “Insurance and re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overview”
- Kenneth E. Spahn(1996), “Service Warranty Associations: Regulating Service Contracts as Insurance under Florida's Chapter 634”, *Stetson Law Review*, Vol. XXV
- Nat Pope, Chiharu Ishida, Peter Kaufman, Frederick W. Langrehr(2014), “Extended Warranties in the U.S. Marketplace: A Strategy for Effective Regulation”,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33, No. 3
- Peter Etzbach(2013), “The Legal Nature of Insurance Contracts”, *IBA Insurance Committee Substantive Project 2013*
- 保険毎日新聞(2016. 4. 5), 修理サービス事業の保険業該当性(上)
- _____ (2016. 4. 6), 修理サービス事業の保険業該当性(下)

부록 I. 영국 PERG 6: Guidance on the Identification of Contracts of Insurance

6.7 Examples

Example 3: manufacturers' and retailers' warranties

6.7.7

Under a simple manufacturer's or retailer's warranty the purchase price of the goods includes an amount, in consideration of which the manufacturer undertakes an obligation (the warranty) to respond (without further expense to the purchaser) to specified defects in the product that emerge within a defined time after purchase. When the warranty operates, the manufacturer or retailer provides repairs or replacement products in response to a defined event (the emergence of a latent defect in the product), which is adverse to the interests of the purchaser and the occurrence of which is uncertain. In summary, therefore, a simple manufacturer's or retailer's warranty is an identifiable and distinct obligation that is similar to and capable of being described as an insurance obligation in substance under PERG 6.3.4 G.

6.7.8

Notwithstanding PERG 6.7.7 G, the FCA's view is that an obligation that is of the same nature as a seller's or supplier's usual obligations as regards the quality of the goods or services is unlikely to be an insurance obligation in substance.

6.7.9

The FCA is unlikely to classify a contract containing a simple manufacturer's or retailer's warranty as a contract of insurance, if the FCA is satisfied that the warranty does no more than crystallise or recognise obligations that are of the same nature as a seller's or supplier's usual obligations as regards the quality of the goods or services.

6.7.10

For the purpose of PERG 6.7.9 G, an obligation is likely to be of the same nature as the seller's or supplier's usual obligations as regards the quality of goods or services if it is an obligation of the seller to the buyer, assumed by the seller in consideration of the purchase price, which:

- (1) implements, or bears a reasonable relationship to, the seller's statutory or common law obligations as regards the quality of goods or services of that kind; or
- (2) is a usual obligation relevant to quality or fitness in commercial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or supply of services of that kind.

Example 4: separate warranty transactions and extended warranties

6.7.11

It follows from PERG 6.7.10 G that the FCA is unlikely to be satisfied that an obligation in a contract of sale or supply is of the same nature as the seller's or supplier's usual obligations as regards the quality of goods or services, if that obligation ha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eatures:

- (1) it is assu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seller or supplier (a 'third party'); or
- (2) it is significantly more extensive in content, scope or duration than a seller's usual obligations as to the quality of goods or services of that kind.

6.7.12

Other things being equal, the FCA is likely to classify a contract of sale containing a warranty that has one or more of the features in PERG 6.7.11 G as a contract of insurance. The features in PERG 6.7.11 G (1) and (2) typically distinguish a 'third party' warranty and an 'extended warranty' from a 'simple' manufacturer's or retailer's warranty.

6.7.13

If a warranty is provided by a third party, the FCA will usually treat this as conclusive of the fact that there are different transactions and an assumption or transfer of risk. This conclusion would not usually depend on whether the provider is (or is not) a part of the same group of companies as the manufacturer or retailer. But it will be the third party (who assumes the risk) that is potentially effecting a contract of insurance.

6.7.14

A manufacturer or retailer may undertake a warranty obligation to his customer in a separate contract with the customer, distinct from the contract of sale or supply of goods or services. The FCA will examine the separate contract to see if it is a contract of insurance. But the mere existence of a separate warranty contract is unlikely to be conclusive by itself.

6.7.15

A manufacturer or retailer may undertake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 customer becomes a party to a separate contract of insurance in respect of the goods sold. This would include, for example, a contract for the sale of a freezer, with a simple warranty in relation to the quality of the freezer, but also providing insurance

(underwritten by an insurer and in respect of which the customer is the policyholder) covering loss of frozen food if the freezer fails. The FCA is unlikely to treat a contract containing an obligation of this kind as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manufacturer or retailer may be in the position of an intermediary and may be liable to regulation in that capacity.

6.7.16

The FCA distinguishes the contract in PERG 6.7.15 G from a contract under which the manufacturer or retailer assumes the obligation to provide the customer with an indemnity against loss or damage if the freezer fails, but takes out insurance to cover the cost of having to provide the indemnity to the customer. The obligation to indemnify is of a different nature from the seller's or supplier's usual obligations as regards the quality of goods or services and is an insurance obligation. By assuming it, other things being equal, the manufacturer or retailer effects a contract of insurance. The fact that the manufacturer or retailer may take out insurance to cover the cost of having to provide the indemnity is irrelevant.

부록 II. 미국 NAIC의 서비스계약 모델법

SERVICE CONTRACTS MODEL ACT

Section 1. Scope and Purposes

A. The purposes of this Act are to:

- (1) Create a legal framework within which service contracts may be sold in this state;
- (2) Encourage innovation in the marketing and development of more economical and effective means of providing services under service contracts, while placing the risk of innovation on the providers rather than on consumers; and
- (3) Permit and encourage fair and effective competition among different systems of providing and paying for these services.

Drafting Note: This model assumes that service contracts are exempt from the insurance code.

B. This Act shall not apply to:

- (1) Warranties;
- (2) Maintenance agreements;
- (3) Commercial transactions;
- (4) Warranties, service contracts or maintenance agreements offered by public utilities on their transmission devices to the extent they are regulated by [insert name of the state agency that regulates public utilities]; and
- (5) Service contracts sold or offered for sale to persons other than consumers.

C. Manufacturer's service contracts on the manufacturer's products need only comply with Sections 5A, 5D to 5N, 6 and 10, as applicable, of this Act.

Drafting Note: States should determine whether to totally exempt manufacturers' service contracts from this Act.

D. This Act shall not apply to service contracts:

- (1) Paid for with separate and additional consideration;
- (2) Issued at the point of sale, or within sixty (60) days of the original purchase date of the property; and
- (3) Where the tangible property has a purchase price of \$[insert monetary threshold] or less, exclusive of sales tax.

Section 2. Definitions

As used in this Act:

A. "Administrator" means the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service contracts or the service contracts plan and who is responsible for any filings required by the Act.

B. "Commissioner" means the commissioner of insurance of this state.

Drafting Note: Insert the title of the chief insurance regulatory official wherever the term "commissioner" appears.

C. "Consumer" means a natural person who buys other than for purposes of resale any tangible personal property that is distributed in commerce and that is normally used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purposes and not for business or research purposes.

- D. “Maintenance agreement” means a contract of limited duration that provides for scheduled maintenance only.
- E. “Manufacturer” means a person that:
- (1) Manufactures or produces the property and sells the property under its own name or label;
 - (2) Is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the person who manufactures or produces the property;
 - (3) Is a corporation which owns 100 percent of the person who manufactures or produces the property;
 - (4) Does not manufacture or produce the property, but the property is sold under its trade name label;
 - (5) Manufactures or produces the property and the property is sold under the trade name or label of another person; or
 - (6) Does not manufacture or produce the property but, pursuant to a written contract, licenses the use of its trade name or label to another person that sells the property under the licensor’s trade name or label.
- F. “Mechanical breakdown insurance” means a policy, contract or agreement issued by an authorized insurer that provides for the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of property or indemnification for repair, replacement or service, for the operational or structural failure of the property due to a defect in materials or workmanship or to normal wear and tear.
- G. “Non-original manufacturer’s parts” means replacement parts not made for or by the original manufacturer of the property, commonly referred to as “after market parts.”

- H. “Person” means an individual, partnership, corporation, incorporated or unincorporated association, joint stock company, reciprocal, syndicate or any similar entity or combination of entities acting in concert.
- I. “Premium” means the consideration paid to an insurer for a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 J. “Provider” means a person who administers, issues, makes, provides, sells or offers to sell a service contract, or who is contractually obligated to provide service under a service contract such as sellers, administrators and other intermediaries.
- K. “Provider fee” means the consideration paid for a service contract in excess of the premium.
- L.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means a policy of insurance issued to a provider and pursuant to which the insurer agrees, for the benefit of the service contract holders, to discharge all of the obligations and liabilities of the provider under the terms of the service contracts in the event of non-performance by the provider. “All obligations and liabilit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failure of the provider to perform under the service contract and the return of the unearned provider fee in the event of the provider’s unwillingness or inability to reimburse the unearned provider fee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a service contract.
- M. “Service contract” means a contract or agreement for a separately stated consideration or for a specific duration to perform the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of property or indemnification for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for the operational or structural failure due to a defect in materials, workmanship or

normal wear and tear, with or without additional provision for incidental payment of indemnity under limited circumstan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owing, rental and emergency road service, but does not include mechanical breakdown insurance or maintenance agreements.

N. “Service contract holder” or “contract holder” means a person who is the purchaser or holder of a service contract.

O. “Warranty” means a warranty made solely by the manufacturer, importer or seller of property or services without charge, that is not negotiated or separated from the sale of the product and is incidental to the sale of the product, that guarantees indemnity for defective parts, mechanical or electrical breakdown, labor or other remedial measures, such as repair or replacement of the property or repetition of services.

Section 3. Requirements For Doing Business

A. Service contracts shall not be issued, sold or offered for sale in this state unless the administrator or its designee has:

- (1) Provided a receipt for the purchase of the service contract to the contract holder;
- (2) Provided a copy of the service contract to the service contract holder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from the date of purchase; and,
- (3) Complied with this Act.

B. All administrators of service contracts sold in this state shall file a registration with the commissioner on a form, at a fee and at a frequency prescribed by the commissioner.

C. In order to assure the faithful performance of a provider's obligations to its contract holders, each provider who is contractually obligated to provide service under a service contract shall:

- (1) Insure all service contracts under a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issued by an insurer authorized to transact insurance in this state or issued pursuant to [insert code section permitting surplus lines business] or;
- (2) (a) Maintain a funded reserve account for its obligations under its contracts issued and outstanding in this state. The reserves shall not be less than forty percent (40%) of gross consideration received, less claims paid, on the sale of the service contract for all in-force contracts. The reserve account shall be subject to examination and review by the commissioner; and
 - (b) Place in trust with the commissioner a financial security deposit, having a value of not less than five percent (5%) of the gross consideration received, less claims paid, on the sale of the service contract for all service contracts issued and in force, but not less than \$25,000, consisting of one of the following:
 - (i) A surety bond issued by an authorized surety;
 - (ii) Securities of the type eligible for deposit by authorized insurers in this state;
 - (iii) Cash;
 - (iv) A letter of credit issued by a qualified financial institution; or
 - (v) Another form of security prescribed by regulations issued by the commissioner; or

Drafting Note: States allowing a letter of credit to serve as security should adopt a definition of "qualified financial institution." The definition in Section 3A of the Model Law on Credit for Reinsurance is the appropriate definition.

- (3) (a) Maintain a net worth of \$100 million; and
 - (b) Upon request, provide the Commissioner with a copy of the provider's or,

if the provider's financial statements are consolidated with those of its parent company, the provider's parent company's most recent Form 10-K filed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within the last calendar year, or if the company does not file with the SEC, a copy of the company's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which shows a net worth of the provider or its parent company of at least \$100 million. If the provider's parent company's Form 10-K or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re filed to meet the provider's financial stability requirement, then the parent company shall agree to guarantee the obligations of the obligor relating to service contracts sold by the provider in this state.

D. Premium Taxes:

- (1) Provider fees collected on service contracts shall not be subject to premium taxes.
- (2) Premiums for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ies shall be subject to applicable taxes.

E. Except for the registration requirement in Section 3B, persons marketing, selling or offering to sell service contracts for providers that comply with this Act are exempt from this state's licensing requirements.

F. Providers complying with this Act are not required to comply with other provisions of Chapter [cite rate regulation and other applicable state insurance statutes],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Section 4. Required Disclosures—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ies insuring service contracts issued, sold or offered for sale in this state shall conspicuously state that, upon failure of the provider to perform under the contract, such as failure to return the unearned provider fee, the insurer that issued the policy shall pay on behalf of the provider any sums the provider is legally obligated to pay or shall provide the service which the provider is legally obligated to perform according to the provider's contractual obligations under the service contracts issued or sold by the provider.

Section 5. Required Disclosures—Service Contracts

- A. Service contracts issued, sold or offered for sale in this state shall be written in clear, understandable language and the entire contract shall be printed or typed in easy to read ten point type or larger and conspicuously disclose the requirements in this section, as applicable.
- B. Service contracts insured under a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pursuant to Section 3C(1) of this Act shall contain a statement in substantially the following form: "Obligations of the provider under this service contract are guaranteed under a service contract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If the provider fails to pay or provide service on a claim within sixty (60) days after proof of loss has been filed, the contract holder is entitled to make a claim directly against the insurance company." A claim against the provider shall also include a claim for return of the unearned provider fee. The service contract shall also conspicuously stat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insurer.

- C. Service contracts not insured under a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pursuant to Section 3C(1) of this Act shall contain a statement in substantially the following form: "Obligations of the provider under this service contract are backed only by the full faith and credit of the provider (issuer) and are not guaranteed under a service contract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A claim against the provider shall also include a claim for return of the unearned provider fee. The service contract shall also conspicuously stat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vider.
- D. Service contracts shall identify any administrator, the provider obligated to perform the service under the contract, the service contract seller, and the service contract holder to the extent that the name and address of the service contract holder has been furnished by the service contract holder.
- E. Service contracts shall conspicuously state the total purchase price and the terms under which the service contract is sold. The purchase price is not required to be pre-printed on the service contract and may be negotiated at the time of sale with the service contract holder.
- F. If prior approval of repair work is required, the service contracts shall conspicuously state the procedure for obtaining prior approval and for making a claim, including a toll-free telephone number for claim service and a procedure for obtaining emergency repairs performed outside of normal business hours.
- G. Service contracts shall conspicuously state the existence of any deductible amount.
- H. Service contracts shall specify the merchandise and services to be provided and any limitations, exceptions or exclusions.

- I. Service contracts shall state the conditions upon which the use of non-original manufacturers' parts, or substitute service, may be allowed. Conditions stated shall comply with applicable state and federal laws.
- J. Service contracts shall state any terms, restrictions or conditions governing the transferability of the service contract.
- K. Service contracts shall state the terms, restrictions or conditions governing termination of the service contract by the service contract holder. The provider of the service contract shall mail a written notice to the contract holder within fifteen (15) days of the date of termination.
- L. Service contracts shall require every provider to permit the service contract holder to return the contract within at least twenty (20) days of the date of mailing of the service contract or within at least ten (10) days if the service contract is delivered at the time of sale or within a longer time period permitted under the contract. If no claim has been made under the contract, the contract is void and the provider shall refund to the contract holder the full purchase price of the contract. A ten percent (10%) penalty per month shall be added to a refund that is not paid within thirty (30) days of return of the contract to the provider. The applicable free-look time periods on service contracts shall only apply to the original service contract purchaser.
- M. Service contracts shall set forth all of the obligations and duties of the service contract holder, such as the duty to protect against any further damage and the requirement for certain service and maintenance.

- N. Service contracts shall clearly state whether or not the service contract provides for or excludes consequential damages or preexisting conditions.

Section 6. Prohibited Acts

- A. A provider shall not use in its name the words insurance, casualty, guaranty, surety, mutual or any other words descriptive of the insurance, casualty, guaranty or surety business; or a name deceptively similar to the name or description of any insurance or surety corporation, or any other provider.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a company that was using any of the prohibited language in its name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is Act. However, a company using the prohibited language in its name shall conspicuously disclose in its service contracts a statement in substantially the following: "This agreement is not an insurance contract."
- B. A provider or its representative shall not in its service contracts or literature make, permit or cause to be made any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or deliberately omit any material statement that would be considered misleading if omitte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 to sell or advertisement of a service contract.
- C. A person, such as a bank,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lending institution, manufacturer or seller of any product, shall not require the purchase of a service contract as a condition of a loan or a condition for the sale of any property.

Section 7. Recordkeeping Requirements

A. Books and Records:

- (1) An administrator shall keep accurate accounts, books and records concerning transactions regulated under this Act.
- (2) An administrator's accounts, books, and records shall include:
 - (a) Copies of each type of service contract issued;
 - (b) The name and address of each service contract holder to the extent that the name and address have been furnished by the service contract holder;
 - (c) A list of the provider locations where service contracts are marketed, sold or offered for sale; and
 - (d) Claims files which shall contain at least the dates, amounts and description of all receipts, claims and expenditures related to the service contracts.
- (3)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7B, an administrator shall retain all records pertaining to each service contract holder for at least three (3) years after the specified period of coverage has expired.
- (4) An administrator may keep all records required under this Act on a computer disk or other similar technology. If an administrator maintains records in other than hard copy, records shall be accessible from a computer terminal available to the commissioner and be capable of duplication to legible hard copy.

B. An administrator discontinuing business in this state shall maintain its records until it furnishes the commissioner satisfactory proof that it has discharged all obligations to contract holders in this state.

C. An administrator shall make all accounts, books and records concerning transactions regulated under this Act or other pertinent laws available to the commissioner

upon request.

Section 8. Termination of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As applicable, an insurer that issued a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shall not terminate the policy until a notice of termination in accordance with [insert citation to the law that governs the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s] has been mailed or delivered to the commissioner. The termination of a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shall not reduce the issuer's responsibility for service contracts issued by providers prior to the date of the termination.

Section 9. Obligation of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Insurers

- A. Providers are considered to be the agent of the insurer which issued the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for purposes of [insert citation to the law that obligates an insurer for the acts of its agents, including the collection of moneys not forwarded]. In cases where a provider is acting as an administrator and enlists other providers, the provider acting as the administrator shall notify the insurer of the existence and identities of the other providers.
- B. This Act shall not prevent or limit the right of an insurer which issued a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to seek indemnification or subrogation against a provider if the issuer pays or is obligated to pay the service contract holder sums that the provider was obligated to pa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service contract or under a contractual agreement.

Section 10. Enforcement Provisions

- A. The commissioner may conduct investigations or examinations of providers, administrators, insurers or other persons to enforce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protect service contract holders in this state.
- B. The commissioner may take action which is necessary or appropriate to enforce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the commissioner's regulations and orders, and to protect service contract holders in this state.
- (1) The commissioner may order a service contract provider to cease and desist from committing violations of this Act or the commissioner's regulations or orders, may issue an order prohibiting a service contract provider from selling or offering for sale service contracts, or may issue an order imposing a civil penalty, or any combination of these, if the provider has violated this Act or the commissioner's regulations or orders.
- (a) A person aggrieved by an order issued under this paragraph may request a hearing before the commissioner. The hearing request shall be filed with the commissioner within [20] days of the date the commissioner's order is effective;
- (b) Pending the hearing and the decision by the commissioner, the commissioner shall suspend the effective date of the order; and
- (c) At the hearing, the burden shall be on the commissioner to show why the order issu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is justified. The provisions of [insert citation to statutes concerning hearings before the commissioner] shall apply to a hearing requested under this paragraph.
- (2) The commissioner may bring an action in [insert court] Court for an injunction or other appropriate relief to enjoin threatened or existing violations of this

Act or of the commissioner's orders or regulations. An action filed under this paragraph may also seek restitution on behalf of persons aggrieved by a violation of this Act or orders or regulations of the commissioner.

- (3) A person in violation of this Act or orders or regulation of the commissioner may be assessed a civil penalty not to exceed \$[insert amount] per violation.

C. The authority of the commissioner under this section is in addition to other authority of the commissioner.

Drafting Note: It is recommended that states review the enforcement procedures in their insurance law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laws to ensure that adequate enforcement provisions are in place.

Section 11. Authority to Develop Regulations

The commissioner may promulgate regulations necessary to effectuate this Act.

Section 12. Separability Provision

If any provision of this Act, or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s, shall be held invalid, the remainder of the Act, and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to person or circumstances other than those as to which it is held invalid, shall not be affected.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 · 윤성훈 · 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 · 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 · 강성호 ·
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 · 최장훈 · 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 · 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이해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 · 박지운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 · 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운아 · 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 · 이태열 · 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 · 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 · 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 · 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흥민 2017.12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장동식 ·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 이경희 ·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의 시사점 / 유경원 ·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 ·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 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이태열 · 신종협 · 황진태 · 유진아 · 김세환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 · 이민환 · 유경원 · 최영목 · 최형선 · 최 원 · 이경아 ·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황진태 · 변혜원 · 이경희 ·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김대환 · 이경희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 안철경 · 변혜원 · 최영목 · 최형선 · 김경환 · 이상우 · 박정희 ·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 류건식 · 오영수 · 조용운 · 진 익 · 유진아 ·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황진태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 이기형 ·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 변혜원 ·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 유진아 ·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임준환 · 김해식 · 이경희 · 조영현 ·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 · 오병국 ·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 김해식 ·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 강민규 ·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 김해식 ·

-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 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직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 변혜원 ·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 김소연 ·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 기승도 ·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 전용식 ·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 · 김동겸 ·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 김석영 · 김세영 ·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 황진태 · 권용재 ·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 조용운 · 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 · 정봉은 · 황인창 · 이해은 · 김혜란 · 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 김진익 · 지재원 · 박정희 ·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기승도 ·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이상우 ·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 이정환 · 최이섭 · 정중영 ·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 · 김상수 · 김종훈 · 변귀영 ·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 전선애 · 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 오영수 ·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 이민환 · 윤건용 · 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 김세환 ·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 최형선 · 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 서대교 ·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 · 김해식 · 유진아 ·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 황진태 ·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 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 · 김해식 ·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 변혜원 · 이승준 · 김경환 ·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 전용식 · 윤상호 · 기승도 · 이상우 · 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황진태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이상우 · 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 변혜원 ·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 강성호 ·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 박선영 ·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 윤성훈 ·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 오승연 ·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 강민규 · 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오승연 · 이상우 · 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 김세중 ·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 조영현 ·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조재린 ·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 ·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 황진태 ·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 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 · 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 · 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 · 김세중 · 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 · 송윤아 · 채원영 2016.4
- 2016-5 금융 · 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 · 임 준 · 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 · 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 · 김해식 · 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 · 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 · 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 ·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 ·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 정원석 · 김동겸

-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 ·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 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 박춘원 ·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 박선영 ·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 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 · 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 이상우 ·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 전용식 · 전성주 ·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 조재린 · 황진태 · 송운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 황인창 ·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 · 조재린 2016.7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 · 이태열 2016.9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 · 이태열 2017.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 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080 / pgc0703@kiri.or.kr)

저자약력

백영화

서울대 법학 학사
사법연수원(31기) 수료
보험연구원 금융법센터 부실장
(E-mail : pyh@kiri.or.kr)

박정희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 pjh@kiri.or.kr)

연구보고서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8년 1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74-9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